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2가단1064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2. 7. 19.

판결 선고2022. 9. 27.

주 문

1. 피고들과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2019. 5. 2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김종신

별지